

2026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안내

2026. 2



경 상 북 도
(장애인복지과)

순 서

I.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관련 규정	1
3. 2026년 사업내용	1
II. 사업 추진체계	2
1. 사업추진절차	2
2. 운영주체별 역할	3
III.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품목	3
1.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3
2. 공고계획	4
3. 보조금지원 대상 선정	5
4. 차량용보조기기 지원 품목	7
IV. 차량용보조기기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	8
1. 표준계약서의 사용	8
2. 계약 및 자부담	8
3. 보조금 집행	8
4. 보조기기 판매 및 개조·제작업체 책임사항	9
5. 설치완료 및 대금(보조금) 청구	9
V. 사후관리 및 지원현황 제출	10
1. 사후관리 (A/S 등)	10
2. 지원현황 제출	10
VI. 기타 참고사항	11
[붙임1]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안	12
[붙임2]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선정 평가표	31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안내

◆ 이 기준은 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상생활(병원진료, 쇼핑 등 단순이동)에서 장애인콜택시 이동서비스를 받는 경우 배차 지연, 잦은 이용불가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지체·뇌병변 장애청소년, 중장년의 경우 신체적 발달로 인해 고령의 보호자가 외출 시 자가용 승하차에 어려움이 따름(보호자 건강 악화)

2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6년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 보조기기) 8종 지원
- 지원대수 : 5대 ※ 대당 보조금액에 따라 기초지자체 간 사업량 조정 가능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 1인 최대 10,000천원 자립/자부담 별도

II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 구매자(지원대상자)는 자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기기 구매대금(대금의 보조금 차액 : 자부담)을 판매업체에 납부하고, 판매업체는 시·군청으로부터 보조금(도비+시군비) 수령

② 운영주체별 역할

- 경북도
 -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시군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도비 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시군비 확보 여부 등)
- 시·군
 -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군비 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집행
- 보조기기센터
 - 차량용보조기기 신청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적합성 평가 실시
 - 사후관리 및 기타 도·시군 협의, 요청사항 등

Ⅲ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품목

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자격) 도내 등록장애인 중 아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
 - (장애유형 및 정도)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
 - *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이라 함은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말함(거동불편 단순 보행성 장애 제외 / 상기 보조기기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① 시설입소 장애인, ②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받은 보조기기 의무사용기간 5년(납품일 기준) 미경과자(다만, 시·군 승인을 얻어 의무사용기간 5년이내 폐기한 경우에는 5년 미경과자라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우선순위 선정 시 최하순위에 포함), ③ 유사사업 선정자
- (대상차량)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 * 보호자 차량의 경우 신청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시 단독 보호자 명의 가능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계획서 등 내용을 확인하고 도 문의 후 적용)

- (소득기준-자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이상, 차상위 30%이상, 차상위 초과 50%이상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지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선형성 등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 (지원규모)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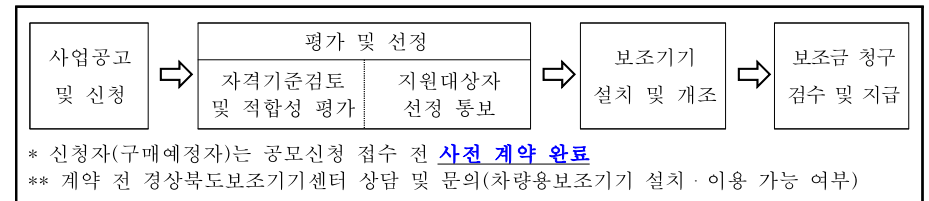
- 1세대 당 1품목 지원(1인 최대 10,000천원과 관계없이 1품목만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선정 후 1개월 내 보조기기 설치 완료
- * 보조기기 구입(운송)·개조·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자부담 별도

- 1인 최대 10,000천원 지원함. 단, 보조금 최대 지원금의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지원범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개조·주문제작 일체의 비용

② 공고계획 ※ 시·군별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통일



○ (공고기간) 2026. 3. 10.(화) ~ 4. 3.(금), (접수기간) 2026. 4. 6.(월) ~ 4. 10.(금)

- 상기 공고 및 접수기간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기간 연장**
- * 단, 재공고 또는 기간 연장은 **2026. 7. 3일까지**로 한하며 상반기 실적에 따라 시·군간 사업량 조정 예정

○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안내 → ② 신청자 사전계약완료 → ③ 사업신청 및 접수 → ④ 자격기준 검토 및 적합성 평가(필요시 현장방문) → ⑤ 보조기기 설치 또는 차량개조 → ⑥ 보조금 청구, 검수 및 지급 → ⑦ 사후관리

③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공고 접수 전에 한해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 (1차 평가) 보행가능자 탈락, 소득기준별 의무자부담비율 미충족자 탈락
- (2차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1순위), 차상위 계층(2순위), 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3순위)
- (3차 평가)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각각 장애정도(30점), 추가 자부담(50점), 1가구 장애인 수(20점) 평가(붙임 2 참조)

⇒ 1순위에 포함된 신청자 중 3차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2순위 신청자 중 3차 평가점수 높은 자 순으로 선정 후 3순위 신청자 중 3차 평가점수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① 동 사업 지원대상자가 의무사용기간 5년 경과 후 재 신청 시 신청자 우선순위 선정 시 최하순위에 포함. ② 시·군 승인을 얻어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 폐기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5년 미경과자라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우선순위 선정 시 최하순위에 포함

○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구매자(지원대상자)에게 차량용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 잔존 능력, 사용 환경, 주요활동 등을 평가하여 보조기기 지원 여부 의견 제출 (지원 결정은 아니며 시군 참고 지표)

- 시군에서는 신청자와 보조기기센터에 연락하고 평가 일정 수립
- 신청자 실제사용 환경을 검토하고자 현장평가 실시(필요한 경우)
- 구매자는 현장평가 시 업체동행 가능한 경우 현장평가일에 업체에 동행요청
- 보조기기 서비스 평가지에 기록하여 시군 통보

○ (선정) 우선순위 적용으로 [붙임2] 평가서에 따라 선정. 단, 동물일 경우 적합성 평가,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최종선정

- * 활용계획서 적용 시 사회활동(정기적 외출-병원, 치료센터, 직장, 학교, 학원 등)의 내용에 따라 사용횟수 및 시간이 많은 신청자로 선정
- 신청자의 1)중복편중지원여부, 2)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 유사자금지원 여부(차량현장 및 사진검토)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선정 결과 공개)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조기기를 설치한 경우
- 차량불법개조 등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매, 제작·개조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후 지원대상자 및 대상차량 등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납품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상 차량 또는 보조기기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사업 참여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구매자(지원대상자)는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4 차량용보조기기 지원 품목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참고)설치가능 차종
승·하차 보조 (8종)	리프트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스타렉스, 솔라티
	이동(회전)시트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때 이용되는 장치	카니발, 스타렉스, 팰리세이드, 모하비, 쉐타페, 레이, 올란도, 카렌스, 승용(세단)차량 (확인 필요) 등
	사이드서포트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승용 (세단) 차량 전 차종
	멀티리프트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SUV 차량(일부 확인필요), 카니발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스타렉스
	경사로(램프)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스타렉스, 카니발, 레이, 쏘울
	체어토퍼 (필요시 사이드서포트 포함 가능)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 자신이 타고온 휠체어를 수납하는 장치	전 차종 가능 (SUV 경우 차량의 지상고 반드시 고려. 체어토퍼 장착시 57cm 높아짐.)
	하이루프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스타렉스, 카니발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개조 또는 주문제작하는 장치 * 신청 전 보조기기센터 사전상담 필수 이행	불가하여 개조 또는

가. 상기 지원 품목 위주로 지원하되, 승·하차 보조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가 있을 시 시·군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나. 설치 가능 차종은 참고 예시일뿐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문의사항은 설치 희망 업체 또는 경북보조기기센터 ☎ 053-850-5800으로 문의)

다. 적합성 평가는 모든 지원 품목 신청 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 상담 필수 이행은 개조 또는 주문제작에 한함

IV 차량용보조기기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

1 표준계약서의 사용

- (표준계약서) 차량용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와 구매자는 <서식 2>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함
-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2 계약 및 자부담금

- (보조기기업체) 구매자(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등)를 공모사업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구매자가 업체에게 요구)
 - 신청 전 계약금 등은 자부담으로 조치(보조사업을 위한 별도 자부담 통장에서 사용)
 - * 자부담금 사용 내역 추후 보조금 청구 시 업체에 제출(업체가 구매자에게 요구)
- (구매자-지원대상자) 구매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계좌에 입금하고 공모사업 신청 시 통장내역 및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 통장에서 계약금 및 선금 등 지출(최종 정산 시 비율에 따라 판매(제작)업체로 보조금 지급)
 - 자부담분 카드결제 시 카드 영수증 또는 전표 등 자부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없을 시 자부담금 납입 확인서 작성 제출
- (기타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2025. 12. 30.)을 따름

3 보조금 집행

- (공통사항) 구매자는 구매대금(자부담분)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에 납부하고, 판매(제작)업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청구·수령
- (보조기기업체) 보조기기를 납품한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시·군) 보조기기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출

④ 보조기기 판매 및 개조·제작업체 책임사항

-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판매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제작
- 보조기기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허위 계약금액으로 자부담비율 조정)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판매(제작)업체에 있음
 - 판매,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작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판매(제작)사 명의여야 함
 - 다만, 보조기기 판매(제작) 대행은 제작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작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⑤ 설치완료 및 대금(보조금) 청구

-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대금 청구
 -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표준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카드 영수증)
- *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 등(자부담)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지자체에서는 위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검수)하여 신청내용과 계약서 상의 구입 및 설치내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2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함
 - *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지원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20일 이내에 판매(제작)업체에 지급해야 함

V 사후관리 및 지원현황 제출

① 사후관리 (A/S 등)

- 판매(제작)업체는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판매(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① ~ ⑥ 중 제출 불가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기기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의무사용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차량용 보조기기	5년 (납품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폐업업체 보조기기 중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시·군 승인 후 폐기 처분가능

② 지원현황 제출

- 지자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현황을 보조금 지급 15일 이내 의무적으로 도에 제출하여야 함
- <가구별 내역>

품목	총금액(원)	보조금	자부담금	지 원 가 구		
				성명	주 소	연락처

VI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안내 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도에 문의 후 사업 추진
-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
 - 각 시·군에서는 공고 시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협조 및 안내 공문 발송
 - 공고 접수 후 신청서류 일체(사본) 포함하여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적합성 평가 의뢰
- 업체 현황은 참고자료일 뿐 선택은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조사 결과 자료
- 시·군별 공고 및 접수기간 통일

- 붙임 1.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안 1부.
2.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평가서 1부.

붙임 1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안

○○시·군 공고 제2026 - 0000호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공고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 .

○ ○ 시장·군수

1.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수) 0대 ※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기간) '26. 04. 6.(월) ~ 04. 10.(금)
- (지원품목)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보조 8종·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참고) 설치가능 차종
승·하차 보조 (8종)	리프트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스타렉스, 솔라티
	이동(회전)시트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카니발, 스타렉스, 팰리세이드, 모하비, 쏘나타페, 레이, 올란도, 카렌스, 승용(세단)차량(확인 필요) 등
	사이드서포트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승용 (세단) 차량 전 차종
	멀티리프트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SUV 차량(일부 확인필요), 카니발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스타렉스
	경사로(램프)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스타렉스, 카니발, 레이, 쏘울
	체어토퍼 (필요시 사이드서포트 포함 가능)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 자신이 타고온 휠체어를 수납하는 장치	전 차종 가능 (SUV 경우 차량의 지상고 반드시 고려. 체어토퍼 장착시 57cm 높아짐.)
	하이루프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스타렉스, 카니발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제작하는 장치 * 보조기기 센터와 사전상담 필수 이행	

* 설치 가능 차종은 참고 예시일뿐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문의사항은 설치 희망 업체 또는 경북보조기기센터(☎ 053-850-5800)로 문의)

2.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 (대상자격) 도내 등록장애인 중 아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
 - (장애유형 및 정도)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
 - *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이라 함은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말함(거동불편 단순 보행성 장애 제외 / 상기 보조기기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① 시설입소 장애인, ②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받은 보조기기 의무사용기간 5년(납품일 기준) 미경과자(다만, 시·군 승인을 얻어 의무사용기간 5년이내 폐기한 경우에는 5년 미경과자라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우선순위 선정 시 최하순위에 포함), ③ 유사사업 선정자
- (대상차량)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 * 보호자 차량의 경우 신청 장애인과 공동명의에 한함(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계획서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시·군 문의 후 적용)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신청서 작성 이전 보조기기 제조·판매사와 보조기기 구매계약 체결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3. 보조기기 지원기준

- (지원규모) 보조금 지원
 - 1세대 당 1품목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선정 후 1개월 내 보조기기 설치 완료
 - * 보조기기 구입·개조·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자부담 별도
 - 1인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예 : 구매가 700만원일 경우, 기초 140만원, 차상위 210만원, 차상위 초과 350만원 자부담) 단, 보조금 최대 지원금의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소득기준-자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이상, 차상위 30%이상, 차상위 초과 50%이상
 -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등
 -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 (지원범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개조·주문제작 일체의 비용

4. 보조기기 지원신청서 및 접수

- (접수기간) '26. 4. 6.(월) 09:00 ~ 4.10.(금) 18:00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 해당부서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이 구매·제작을 희망하는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표준계약서(서식 2) 작성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1 및 제출서류),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 (VI 제출서류 확인)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공고 접수 전에 한해 우선순위 선정

- 접수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의해 구매 및 제작·개조 최종 신청 자격 부여
 -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 각 항목별 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자 우선 선정**
- 우선순위 적용으로 동률일 경우 *적합성 평가 및 필요성 **활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최종선정
 - * 적합성 평가 :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실시
 - ** 활용계획서 : 활용계획서 적용 시 사회활동(정기적 외출-병원, 치료센터, 직장, 학교, 학원 등)의 내용에 따라 사용횟수 및 시간이 많은 신청자로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조기기를 설치한 경우
 - 차량불법개조 등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매, 제작·개조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 ○○시·군의 승인 없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후 지원대상자 및 대상차량 등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 ○○시·군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납품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상차량 또는 보조기기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6.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구매대금(자부담분)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에 납부하고, 판매(제작)업체는 ○○시·군로부터 보조금 청구·수령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판매업체)
 -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3)
 - 세금계산서(자부담 포함 총 구매금액) 등, 자부담 입금 확인서류 (통장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청렴이행서약서, 사진대지
- 제출기간 : **보조기기 납품 후 10일 이내**(마감기한 : 26. 00. 00(○) 18:00)
(제출처 : ○○시 ○○로 00 ○○시청 장애인복지과)
- 대상자 선정 전 보조기기 납품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마감기한 경과 후 지급신청서(원본) 제출 시 지급 불가

7.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안내(경상북도)」 및 ○○시·군 ○○○○과의 결정에 따름.
- 기타문의 : ○○시 ○○○○과(☎054-000-0000)

- 붙임 1. 2026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I~VI) 1부.
2. 표준계약서(서식 2) 1부.
3.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3) 1부. 끝.

【서식 1】 앞면

신청일자	2026. . .
접수번호	(접수자가 기입합니다)

2026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일반 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 . . (세)	장애유형/정도	지체·뇌병변 / 심한 장애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①(신청인)	이메일	
	②(보호자)		
소득기준 (최소 자부담)	☐ 차상위 초과(50%)	☐ 차상위 계층(30%)	☐ 기초생활수급권자(20%)
사회활동 (직업 등)	☐ 무직		
	☐ 학생 [학교명 :]		
	☐ 직장인 [직장명 :]		
	☐ 기타 [내용기입 :]		
신청동기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신청 보조기기 * 신청 품목 안내서 참조	품목	기타 개조 또는 주문제작 내용(상세기재)	
	총금액	보조금	자부담
유의사항안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 합리적 사유없이 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기기를 손상시킨 경우 물품의 잔존가액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면을 통한 상담·평가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선정 결과에도 수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시군 및 보조기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전달식, 보조기기 활용 수기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였으며, 본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개조불가, 구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보조기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안내(경상북도)」 따른 **의무사용기간(납품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또는 양도 필요시 ○ 사·군의 승인 후 조치

○ 의무사용기간 내 폐차 시에는 ○ 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폐차 시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대상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용보조기기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에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차량용보조기기 구매보조금은 ○ 사(군)가(이) 해당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로 지급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차량용보조기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장애원인	[발생시기, 진단명, 장애원인, 희귀질환일 경우 등록 여부 등 서술]
신체적 기능정도	[상/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의사소통기능, 시청각기능 등 서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방법	[식사하기, 용변처리, 실내/외 이동방법, 일상생활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주요활동 등 서술]

II 신청 차량용보조기기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

신청 차량용보조기기		
품목번호		품목분류
세부 제품명 및 옵션		
차량용 보조기기 필요성	[이동 또는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불편사항, 신청계기 등 서술]	
활용계획	[일상생활, 사회활동, 불편사항 개선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 계획 서술]	

III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5년)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복지카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간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원인, 장애상태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주무관청(경상북도, 각 시군), 외부 심사위원, 납품 업체
이용 목적 및 기간	보조기기 서비스 실적 관련 정책 방향 수립 외부 지원사업 심사 등(5년)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 장애유형 및 등급, 신청 보조기기 등

■ 홍보를 위한 정보 활용(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간	현장평가, 기기적용 사진 및 동영상 활용 등(5년)
홍보처	시군 및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등), 보도자료, 사례집 등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보조기기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법정대리인 : (인)

※ 14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인지 및 판단 능력의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기관명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	이메일	연락처
○○시·군	○○○○○과장	○○○ 주무관	○○○○○@korea.kr	054-000-0000

IV 자부담 납입 약속서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자부담금 납입 약속서

사업명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신청자		주관기관	○○시·군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차량명		구매 품목	
소득기준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총 구매액	원		
자부담금	원(자부담 비율 %)		

본인은 2026년도 ○○○시(군)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참여에 동의하며,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에 선정 시 자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시장·군수 귀하

V 사업 추진절차



VI 제출서류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인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럼 이행서약서 1부

참고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판매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연락처	비고
무궁화오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자삼로 190	031-284-1870	
복지프랜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길 251-10	031-681-1812	
라이드웍스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110	032-567-2148	
㈜오택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101호	02-2628-0660	
창림모아츠 (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529-12	031-359-8323	
(주)탈모탈리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로 30번길 49	1877-7570/ 031-353-1663	
(주)신광이지 무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16번길 56	031-689-3100	
(주)네오엘 에프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318호	031-5175-6069	
(주)다온티앤티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16	1599-6383	
뉴원이앤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57-10	1544-3745	
용성오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24-2	02-423-9999	
(주)학림공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468 디지털3단지	02-868-9371	
에스피앤유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3길 15-4	070-8977-5555	도 자문업체
성무모터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1길 2-29	053-565-1696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발간자료 ‘보조기기 선택 및 활용 안내서(자동차 보조기기편p.54)’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참고

【서식 2】 표준계약서

< 계약 일반조건 >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매(제작)계약서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경북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차량용보조기기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원)을 매도인의 계좌(○○은행)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로 자부담 납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 계약금 없을 경우 생략

② 매수인은 계약금 외 잔액(원)을 비율에 따른 자부담 납부와 함께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지자체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자부담 원, 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 보조금 매도인이 지자체 청구

※ 부득이한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선정 공고문 등)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서명)

계 약 당사자	구 매 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 택		
	공 급 업 체	(주) 〇 〇 〇 (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연 락 처	핸 드 폰			
			A / S			

계 약 내 용	품 목				수 량			
	공급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잔액	
			(A)+(B)+(C)		(A)		자부담금	보조금
	대상차량		차명 / 차량번호 /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금 계좌 (보조금 입금 계좌)							
----------------------	--	--	--	--	--	--	--

계 약 일 자		년 월 일					
---------	--	-------	--	--	--	--	--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차량용보조기기에 대하여 경상북도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안내 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납품일로부터 00년간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일로부터 00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사업 대상자 미선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미선정에 따른 계약금을 환불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조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조기기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조기기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조기기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서명)

【서식 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판매업체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보조기기 구매내역	품목	총금액	자부담 계약금 잔액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보조금)	
2026년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표준계약서(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설치완료 확인서 1부 6.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7. 청렴이행서약서 1부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신중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2026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선정 평가표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선정 평가서(안)

* 심의기준

- 자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
- 우선순위 적용으로 동률일 경우 적합성 평가,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최종선정

** 세부평가방법

- 보행기능여부 : ‘가’일 경우 당연 탈락
- 소득기준 : 순위 내에서 점수 평가(예시 : 기초 55점 / 차상위 90점 경우 기초 우선선정)
- 1차, 2차 평가항목 결정 후 해당 소득기준 내에 선정 시 ③ ~ ⑤ 점수 적용

신청자			품목업체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1차	①보행가능여부 (가부)	가			부			가/부	
2차	②소득기준 (순위)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1가구에 장애인 2인이상)		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3차	③장애정도 (30점)	심한장애(중복)				심한장애			
		30				20			
	④추가 자부담 (50점)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50	40	30	20	10			
	⑤1가구 장애 2인 이상 (20점)	4인이상		3인		2인			
20		10		5					
총점									
종합의견									

* 추가자부담은 소득기준별 최소 의무 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자부담하는 비율(예:기초생활수급자가 자부담 40%로 신청한 경우 최소 의무 자부담 비율 20%, 추가 자부담은 20%이므로 20점 부여)

2026년 월 일

o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